[서식 예] 철회권

방문판매 등의 철회권 행사 주요내용

구 분	할 부 거 래	방 문 판 매	전화권유 판매	다 단 계 판 매
철회권 행사 기간	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 물 인도일부터 7일 이내 	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(방문판매법)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재화의 내용이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		
철회제한	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멸실·훼손(내용확인을 위하여 포장훼손은 제외) ② 재화등의 일부소비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 ③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			
효력발생시기	• 발송일			
계약서교부 상품인도에 대한사실 및 시기에 대한 입증 책임자	• 할부판매업자	• 방문판매업자	• 전화권유판매업자	• 다단계판매업자

※ 통신판매: 7일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